임시 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21년 10월 28일(목) 오전 10시00분 ~ 11시00분

2. 장 소 : 비대면 회의(ZOOM)(코로나 19 감염차단 목적) 진행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350(2020.03.12.) 근거

3. 회의소집 통지 내용

• 통 지 일 : 2021년 10월 12일(화)

• 통지대상 : 이사 10명, 감사 2명

• 통지방법 : 이사회소집 이메일 발송 및 유선 연락

• 회의목적 :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2021년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이랜드복지재단 기본재산 예금은행 변경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 신청 심의의 건

이랜드복지재단 정관 변경 심의의 건

이랜드복지재단 비품 불용처리 심의의 건

4. 출석임원 : 박성경, 이광일, 정순둘, 김광영, 최동주, 신경섭, 전승만, 손병덕, 배극수, 최미경 (이사 10명) 이천화, 이창구(감사 2명)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이광일 대표이사가 재적이사 10명 중10명(박성경, 이광일, 정순둘, 김광영, 최동주, 신경섭, 전승만, 손병덕, 배극수, 최미경), 감사 2명 중 2명(이천화, 이창구)이 참석함을 보고하니, 박성경 이사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6. 전차 회의록 통과

이광일 대표이사가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다. 정순둘 이사의 동의와 손병덕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을 통과하다.

7. 2021년 3분기 주요 성과보고

심정영 국장이 법인의 2021년 3분기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하다.

8. 안건보고 및 심의

<제 1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2021년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박성경 이사장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의 2021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안건을 상정하다. 심정영 국장이 보조금 및 사업수입, 후원금 등의 예산 변동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2021년 추경예산(안) (단위					
기관명	기정(A)	추경(B)	증감(B-A)		
시립마포노인종합 복 지관	3,383,491	3,394,680	11,189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4,157,195	4,104,678	△52,517		
하당노인복지관	4,431,329	4,506,229	74,900		
진도군노인복지관	1,875,767	1,877,054	1,287		
서구노인종합복지관	6,227,928	6,158,022	△69,907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3,697.000	3,750,000	53,000		
봉화군노인복지관	2,612,912	2,576,818	△36,094		
남목노인복지관	2,039,200	2,021,796	△17,404		
남목노인복지관 부설 치매보호센터	410,722	408,722	△2,000		

이천화 감사가 각 시설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보고가 되어 사전 검토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정순둘 이사의 동의와 손병덕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의 2021년 추경예산(안) 심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제 2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 박성경 이사장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정영 국장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시설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운영규정 신구 대비표]

유가에 내하여 모장할 의무가 없고, 된게 법령에 따른 복지관의 귀책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복지관이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복지관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복지관이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연번	현행(2020.03	.30.)	개정(안)	개정사유
축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1	제63조 (연차유급휴가사용촉	진) ① (생략)	② 복지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복지관은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관계 법령에 따른 복지관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복지관이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복지관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복지관이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영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연번	현행(2020.03.30.)	개정(안)	개정사유
		정하여 복지관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복지관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제70조(임산부의 보호) (생략) ⑤ 제⑦항 내지 제⑧항의 시행시기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70조(임산부의 보호) (생략) ⑤ 복지관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제⑦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⑨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⑥ 제⑦항 내지 제⑧항의 시행시기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영 (근로기준법 74조)
3	제74조(육아휴직) ① 복지관은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하생략)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직원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안 반영 (남녀고용 평등법 제19조 제1항)
4	제7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복지관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 <u>휴직 대신</u>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이하생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 하는 경우 이를 허용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안 반영 (남녀고용 평등법 제19조 의2)
5	제76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직원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1을 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I .

연번	현행(2020.03.30.)	개정(안)	개정사유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가능)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 (1회만 가능)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제20조(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발생 시조치) (생략) ⑧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발생 시조치) (생략) ⑧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영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이에 김광영 이사의 동의와 최동주 이사의 재청으로 박성경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제 3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기본재산 예금은행 변경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 신청 심의의 건 박성경 이사장이 이랜드복지재단 기본재산 예금은행 변경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 신청 심의 안건을 상정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제6호부터 제7호에 따라 비공개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제6호부터 제7호에 따라 비공개 함.

정순둘 이사의 동의와 배극수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묻고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이랜드복지재단 정관변경 심의 건을 승인 가결하다. 의장은 추후조치를 사무국에 당부하다.

<제 5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비품 불용처리 심의의 건

박성경 이사장이 이랜드복지재단 비품 불용처리 심의 안건을 상정하다. 심정영 국장이 이랜드복지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비품 중 노트북 2대가 노후로 인해 수리가 필요하나 해당 부품이 단종 되어 수리를 할 수 없음으로 불용 처리가 필요함을 설명하다.

[불용처리 할 비품현황]

연번	구분	품명	수량	취득일자	불용사유
1	업무용노트북	삼성 NT900X3G-K79S	1	2014.12.28	노후화모델 [내용연수 기준초과]
2	업무용노트북	삼성 NT910S3T-K81S	1	2015.03.03	노후화모델 [내용연수 기준초과]

정순둘 이사가 동의하고, 손병덕 이사가 재청하다. 이에 의장이 가부를 묻고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이랜드복지재단 비품 불용처리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가결하다. 의장은 추후조치를 사무국에 당부하다.

9. 폐회선언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최동주 이사가 폐회 동의하고 최미경 이사가 재청하여 박성경 이사장이 가부를 묻고 전원 찬성하여 폐회를 선언하다. 이상의 의사진행과 결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출석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다. 폐회시각 11시 00분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이사장 박성



대표이사 이 광 일



이 사 정 순 들



이 사 김 광 역



이 사 최 동 주



이 사 신경



이 사 전 승



이 사 손병



이 사 배 극



이 사 최 미 경



감 사 이 천 호



감 사 이 창















